##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준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5346

발의연월일: 2024. 11. 7.

발 의 자:정준호·이춘석·윤종군

최기상 • 복기왕 • 문진석

이연희 • 박용갑 • 안태준

이학영 · 임호선 · 염태영

의원(12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제민간항공기구 회원국은 「국제민간항공협약」 제37조(국제표준 및 절차의 채택)에 따라 국제항행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위해 같은 협약 부속서에 정해진 국제 표준을 자국의 규정으로 채택하고, 국제표 준과 다르게 규정할 경우 협약 제38조에 따라 국제민간항공기구에 통 보하도록 하고 있음.

또한, 국제민간항공기구는 항공안전평가제도를 도입하고 '98년부터 회원국의 국제표준 이행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고 있으며, 우리나라는 2000년 수검한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미국의 국제항공안전평가를 받고 항공안전 2등급을 받아 국제 신인도 하락 등 많은 어려움을 겪은 바가 있으며, 2026년에 국제민간 항공기구의 항공안전평가를 수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.

국제민간항공기구는 회원국에 제공한 안전평가지침에서 국가가 규

제당국이면서 서비스제공자인 경우, 규제당국과 서비스제공자 간 기능과 책임을 명확히 분리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고 잠재적 및실질적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으며, 항공안전평가과정에서 항공교통조직의 규제기능과 서비스제공 기능의 분리 여부를확인하고 있음.

현재, 국토교통부는 항공정책실(항공교통과)에서 정책 및 규제업무를, 소속기관(지방항공청, 항공교통본부)에서 항공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소속기관의 항공교통업무를 총괄하는 기능이 규정되지 않아 항공정책실(항공교통과)에서 소속기관의 공통업무(교육, 인력 등)를 조정하고 있어,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항공안전평가에서 요구하는 규제기능과 서비스제공 기능 간 명확한 분리가 필요한 실정임.

이에 법률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로 항공교통업무 등의 표준화 및 평가, 인력수급 및 교육훈련, 시설·장비의 설치, 개량 및 유지보 수, 업무수행 확인 및 운영평가, 통계의 수집 및 작성 등을 규정하고, 이를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속기 관 내에서 서비스제공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민 간항공기구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려는 것임(안 제89조의2 신설).

##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항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장에 제8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9조의2(항공교통업무등의 표준화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8조 제3항에 따른 계기비행절차의 설정 및 공고, 제83조에 따른 항공교 통업무의 제공 및 제89조제1항에 따른 항공정보의 제공(이하 이 조에서 "항공교통업무등"이라 한다)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- 1. 항공교통업무등 표준화 및 평가
- 2. 항공교통업무등 관련 인력의 수급 및 교육훈련
- 3. 항공교통업무등 관련 시설·장비의 설치, 개량 및 유지·보수
- 4. 항공교통업무등에 대한 확인 및 운영 평가
- 5. 항공교통업무등 관련 통계의 수집 및 작성
- 6.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
- ② 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등의 표준화 및 운영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 </u>	제89조의2(항공교통업무등의 표
	준화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
	제78조제3항에 따른 계기비행
	절차의 설정 및 공고, 제83조에
	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제공 및
	제89조제1항에 따른 항공정보
	의 제공(이하 이 조에서 "항공
	교통업무등"이라 한다)을 안전
	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
	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
	<u>행한다.</u>
	1. 항공교통업무등 표준화 및
	<u>평가</u>
	2. 항공교통업무등 관련 인력의
	수급 및 교육훈련
	3. 항공교통업무등 관련 시설ㆍ
	장비의 설치, 개량 및 유지ㆍ
	<u>보수</u>
	4. 항공교통업무등에 대한 확인
	<u>및 운영 평가</u>
	5. 항공교통업무등 관련 통계의
	<u>수집 및 작성</u>
	6.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

정하는 업무

② 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 등의 표준화 및 운영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한다.